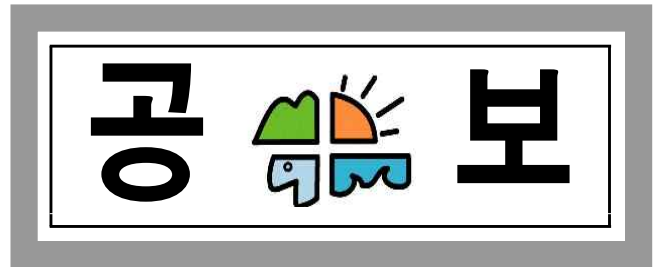
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  |         |
|---|---------|
| 선 | 기 관 의 장 |
| 람 |         |



제690호 2012년 4월 4일(수)

## 공 고

-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 2
-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 7

|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##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」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4월 4일

### 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

#### 2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○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적 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차보전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,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사치·향락·소비성업체 등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있는 건전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늘리고자 함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).

나. 융자금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사용실태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휴업 또는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이차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(안 제6조제3항).

다. 자금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를 완화하고, 기업의 매출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실제적인 경영안정 도모 및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3조 “별표”).

(1) 지원대상기업(우선지원, 특별지원, 기타지원)중 기타지원대상을 “중소유통업체”에서 “중소기업”으로 완화하고,

(2) 자금지원 용도를 “운전자금”에서 “시설 및 운전자금”으로 확대 및 용자 한도를

“지원한도액 범위”에서 “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 범위”로 하여 기업의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자금지원을 피하고,

(3) 3천만원 이내의 신청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영세기업에 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함.

#### 4. 자치법규안 : 붙임

#### 5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경제노동담당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 ·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217-030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469-6)

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 경제노동담당

(전화 : 033-639-2351, FAX : 033-639-2465, Email : onkel78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#### 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경제노동팀 정태균(전화:033-639-235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항 제7호 및 같은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

7. 사치·향락·사행성 등 소비성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조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체

② 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업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3월 이내에”를 “3개월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실태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휴업·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.

“별표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##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(제3조 관련)

| 구 분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대상기업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선 지원대상(제조업중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출상품 생산업체</li> <li>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</li> <li>농공단지 입주업체</li> <li>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큰 업체</li> </ol> </li> <li>특별 지원대상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설악산국립공원지역(설악동)내 중소기업</li> </ol> </li> <li>기타 지원대상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경제와 밀접한 중소기업</li> <li>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</li> </ol> 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용 도     | 시설 및 운전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용 자 한 도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선 지원대상(제조업) : 3억원 이내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, 3천만원 이하의 신청건은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추천 가능<br/>(결산재무제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참조)</li> <li>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이 8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% 이내 추가 가능</li> </ol> </li> <li>특별 지원대상 : 5억원 이내<br/>(융자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, 도비 등 외부지원이 있는 경우, 10억원까지 용자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 은행융자액 범위 안(금융기관 부채현황서 등 참조)</li> <li>신규 은행융자액 범위 안(금융기관 대출추천서 등 참조)</li> </ol> </li> <li>기타 지원대상(비제조업) : 7천만원 이내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, 3천만원 이하의 신청건은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추천 가능<br/>(결산재무제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참조)</li> <li>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%이내 추가 가능</li> </ol> </li> </ol> |
| 지 원 조 건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리 : 은행 일반 대출 금리중 5% 이내를 이차보전</li> <li>이차보전기간 : 융자일로부터 2년간<br/>(단, 특별 지원대상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)<br/>※ 기간연장 : 1년만 연장가능<br/>(단, 특별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)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5조(자금지원 추천제외) ① <u>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<u>휴업, 폐업중인 업체</u></p> <p>5.~6. (생략)</p> <p>7.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<u>&lt;신설&gt;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5조(자금지원 추천제외) 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</u></p> <p>5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사치·향락·사행성 등 소비성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체</u></p> <p>② <u>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업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|
| <p>제6조(대출기한) ① 자금지원을 추천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<u>3월이내에</u>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(단, 대출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날까지로 한다.) <u>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금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시장은 필요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.</u></p> | <p>제6조(대출기한) ① 자금지원을 추천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<u>3개월 이내</u>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(단, 대출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날까지로 한다.) <u>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금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실태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휴업·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|

##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4월 4일

### 속 초 시 장

#### 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#### 2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○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, 주민 및 행정기관 간의 상호 협력적 역할 강화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,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##### 가. 노사민정의 책무(안 제2조)

○ 노사민정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과 존중의 의무를 부여 하도록 함.

##### 나. 협의회의 구성(안 제4조)

○ 지역 노사민정 간의 협력적 역할 강화 및 활성화 증진을 위해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“노사민정협의회”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.

##### 다. 사무국 설치(안 제10조)

○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,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##### 라. 실무협의회의 구성(안 제11조)

○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·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“노사민정실무협의회”를 둘 수 있도록 함.

#### 4. 자치법규안 : 붙임

#### 5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**2012년 4월 10일까지**  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경제노동담당)에게 제출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 ·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217-030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469-6)

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 경제노동담당

(전화 : 033-639-2352, FAX : 033-639-2465, Email : diddntjr2003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## 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경제노동팀 양우석(전화 : 033-639-2352)에게 문의  
하시기 바랍니다.



##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속초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, 노사협력증진, 그 밖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** 근로자·사용자·시민 및 속초시(이하 “노사민정”이라 한다)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설치 및 기능)**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협의회의 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

1.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
2.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3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
4. 시 노사·고용관련 업무 담당 과장
5. 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6.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
7.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**제7조(위원의 해촉)**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망·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
2.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하는 때
3.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4.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

**제8조(회의)**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간사 및 서기)**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,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.

**제10조(사무국)**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1조(실무협의회)**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·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

2.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

3. 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노사업무 실무 책임자

4.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

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.

**제12조(의견청취 등)**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3조(성실히행의무)** ① 관계 행정기관,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 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협의회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

업체, 관련기관·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

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**제14조(수당 등)**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속초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속초시노사정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본다.